

의안번호	2206123
의 퇴 인	박용갑 의원
회 답 일	2025.1.16.
추계번호	24D55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8조의4(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함)를 작성하고, 법 제8조¹⁾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함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의5(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이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법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함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효과 분석 및 평가, 인구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이하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라 한다)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그 밖에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의무규정

-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8조의4(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8조의5(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신설	

2. 상세 사유

-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제출(안 제8조의4 및 제8조의5 신설)
- 현행법²⁾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나, 인구인지 관련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서는 작성하지 않고 있음
 - 개정안³⁾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에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는 성인지 기금결산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 이 개정안은 박용갑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2호),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0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4호) 및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61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인구 증감 및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등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인구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인구영향평가 종합분석보고서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등 이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인력 증원 또는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인구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인지 기금결산서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예산 규모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인지 기금 운영 관련 조례가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는 등 현시점에서 합리적 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의 추계가 곤란함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